

품목분류
CASE 2 디스플레이 사인

판정번호
N360783

물품 정보

쟁점 HS



용도

- 상점에서 상품 정보 및 홍보용 문구 등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용 사인

제 9610 호

필기용 보드

유형

- 벽면 디스플레이 사인: 상점 벽면에 고정하는 사인
- 제품 디스플레이 사인: 제품 케이스에 삽입하거나 제품 주변에 전시

제 4911 호

그 밖의 인쇄물

CBP 판단

미국 HS-CODE 결정

- 제9610호의 필기용 보드는 사용자가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필기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
- 수입 이전에 이미 문구가 기재되어 필기 가능한 표면 공간이 없는 사인은 필기용 보드에 해당하지 않음
 - 사용자가 문구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충분한 필기 공간을 갖춘 사인: 제9610호(필기용 보드)
 - 수입 전에 이미 문구가 기재되어 필기 가능한 공간이 없는 사인: 제4911호(그 밖의 인쇄물)

필기 공간을 갖춘 사인

9610.00

수입 전에 문구가 기재된 사인

4911.10

수입 시점에 이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인은 필기용 보드가 아닌 인쇄물로 분류